

문서번호	생활보장과-6751
결재일자	2015.3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활주거담당	생활보장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박종원	이상월	代조민숙	전결 03/06 도일환		
협 조					

2015년 지역자활지원사업계획

2015. 3.

교육문화복지국
생활보장과

목 차

I	<u>2015 지역자활지원사업 계획</u>	1
1	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개요	1
II	<u>2014년 지역자활지원사업 추진 실적</u>	2
1	총괄	2
2	추진성과 및 평가 · 개선방향	3
3	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	5
III	<u>2015년도 지역자활지원사업 추진 계획</u>	6
1	자활지원계획 목표	6
2	자활지원사업 대상자 현황	7
3	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	8
4	기타 자활지원사업	13

- 저소득층 자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-

2015년 지역자활지원계획

저소득층의 자립·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「2015년 지역자활지원계획」을 수립하고자 함

I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개요

1 관련 근거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(자활지원계획의 수립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(지역자활지원계획)

2 계획 목표

- 전문적·체계적 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제공
- 취업연계사업의 강화를 통한 탈수급률 및 취창업률 제고
 -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적극 발굴
- 자립기반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

3 추진 방향

-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자활사업 개발 등 다각화 및 내실화
-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자활역량 강화로 탈수급 촉진
-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지속 추진

2014년도 자활사업 추진실적

1 총괄

□ 2014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자활사업 대상자 (A+B+C+D)	수급자				비수급자
		소 계 (A+B+C)	조건부 수급자(A)	자활특례자 (B)	일반수급자 (C)	
2015.1.1. 현재	622	563	531	15	17	59

□ 2014년도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총 계 (a+b)	복지부(지자체)									고용 노동부 (b)
		계 (a)	자활근로					GateWay	자활공동체 (자활기업)	성과 중심 자활	
			소계	시장진입형	사회적 일자리형	인턴·도우미형	근로유지형				
2015.1.1. 현재	622	361	200	34	36	40	90	11	19	131	261

2 추진성과 및 평가

1) 추진성과

□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기회 제공

- 시장진입형·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총 200명이 참여하여 근로를 통한 자활의지 고취

□ 자활사업을 통한 취·창업 지원 및 탈수급 촉진

- 성북지역자활센터 등 3개 민간기관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
 - 자활능력 배양 가능성, 민간시장 진입가능성, 생산성 및 효용성, 공익성 등을 충족하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진행
 - 자활성공자 : 참여자 622명 중 취업 103명(18.29%), 탈수급 39명(6.93%)

□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내실화

-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배치를 통한 상담과 사례관리로 체계적인 맞춤형 자립·자활지원

2) 평 가

□ 평가 결과

- ‘학교청소’사업단, ‘스팀세차’, ‘꽃향기’ 사업단은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판로개척 등으로 투입사업비 대비 각각 30%이상, 36%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함
-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한 ‘자전거’ 사업단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시장진입형으로 전환
- 전문간병도우미,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, 장애인활동보조, 시각장애인의외출보조 등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자활근로사업은 매출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
-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·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·탈빈곤 유인강화
-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배치 후 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참여 대상자의 취업능력 평가, 욕구 및 참여여건 사정 등을 고려한 자활프로그램 지정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관리가 이루어짐

문제점 및 어려운 점

-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 인원의 증가로 운영 중인 자활사업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포화상태임
-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활사업대상자의 대부분이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근로의욕이 낮아 자활사업을 통한 단기간 내 취·창업이 어려워 자활참여가 장기화 됨
-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가 일반경쟁시장과의 조직(유통) 및 품질경쟁력이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어, 안정적인 사업단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된 시장이 필요하나 행정기관의 자활생산품 구매 및 판로지원 등 지원이 부족

3) 개선방향

자활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

-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신규 자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단 중 성과가 높은 사업단은 확대 실시
 - ※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의견 : 신규자활사업에 대한 발굴과 기회 확대

자활사업 참여의 다각화

- 근로의욕이 높은 참여자의 취·창업 확대를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도로 민간 취업중심 참여자 비율 확대

보호된 시장 확보

- 자활기업 및 사업단 생산품 판매 지원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행정 물품 구입 시 우선구매 요청

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내실화 및 다각화

- 매출액이 총사업비 대비 10% 이상(매출액 기준) 발생토록 운영·관리
 -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, 사업단 폐지 검토
- 다만, 사회복지서비스형 사업단의 경우 수혜대상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매출액 기준 보다는 사회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

3 | 자활사업 추진실적

□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

(2014.12월기준)

사업단		인원 (명)	사업비 현황(천원)			2014년 매출관련현황(천원)		
			계	인건비	사업비	매출액	매출직립금	수익금
총 계		321	2,462,170	2,165,508	296,662	234,945	197,982	36,963
시장진입형	학교청소	14	225,085	166,277	58,808	67,734	58,808	8,926
	꽃향기	2	43,599	30,630	12,968	15,854	12,968	2,886
	더마실카페	10	172,061	119,097	52,964	56,369	52,964	3,405
	스팀세차	7	102,986	76,459	26,527	37,595	26,527	11,068
사회서비스형	장애통합 교육보조	8	74,228	69,390	4,838	-	-	-
	자전거	7	93,633	75,049	18,584	29,262	18,584	10,678
	수공예	11	139,214	116,731	22,483	18,423	18,423	-
	컴퓨터	8	97,735	78,194	19,541	6,198	6,198	-
	교육복지 (시범)	5	9,134	8,652	482	-	-	-
	함께하면 행복한세상	6	56,936	53,598	3,338	629	629	-
	시각장애인의 출도우미	8	81,668	77,075	4,594	802	802	-
	새봄이웃파견	6	59,842	57,122	2,720	2,079	2,079	-
Gateway과정		65	141,346	102,384	38,962	-	-	-
전담관리자 인건비			29,853	-	29,853	-	-	-
직접 시행	근로유지형 인턴형	89	548,682	548,682	-	-	-	-
	복지 자활도우미	62	552,258	552,258	-	-	-	-
	구 자 체	13	33,910	33,910	-	-	-	-

□ 자활기업 운영실적

(2014.12월기준)

자 활 기업명	인 원(명)						설립 일	수익금 현황(천원)						비고	
	계	수 급 자						총액	월평 균	매출액		지출액			적립 액
		소계	조건부	일반	자활 특례	차상위 등				총액	월평 균	인건비	사업비		
계	14	10	8	1	1	4		184,596	17,463	134,983	49,613	13,057	4,406	0	
사랑의 가게	2	1	-	1	-	1	2002. 11.11	36,279	3,024	21,000	15,279	1,750	1,274	-	
굿모닝기획	1	1	1	-	-	-	2008. 08.31	27,462	2,289	17,604	9,858	1,467	822	-	
성 북 크 린	4	2	2	-	-	2	2009. 10.01	42,250	3,520	33,773	8,477	2,814	706	-	
마술빛자루	3	2	2	-	-	1	2011. 03.01	53,640	4,470	40,896	12,744	3,408	1,062	-	
명인C&M	4	4	3	-	1	-	2014. 07.01	24,965	4,160	21,710	3,255	3,618	542	-	

1 | 지역자활지원계획 목표

□ 기본방향

-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활참여자들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여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지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경로 제시로 자활성공률 제고
- 자활사업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도모

□ 자활사업별 목표

-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근로 능력 판정, 분기조사 등 관리 철저
- 자활사례관리 강화로 자활 참여자의 욕구 및 근로능력 등 개인특성에 맞는 근로기회 제공,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실시
-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증대를 통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수익금 확보
-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
- 통장사업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, 자활기업 창업운영 지원 강화 및 생업자금 융자 등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

□ 자활인프라 구축목표

-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민·관 협력체계 강화
- 지역자활센터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자활센터 기능 강화
- 고용·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및 정보 연계 강화 적극 추진

2 | 2015년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

□ 전체현황

(2015.1.1. 기준, 단위 : 명)

총 수급자 ①	근로 능력자 ②	수급자대비 근로능력자 비율	근로능력자대비 자활사업대상자 비율	자활사업대상자			조건부과제외자				자 활 특 례 자 ⑤
				소계 ③	참여자	불이행자 및 유예자	소계 ④	취업 상태	가구 여건	환경 적응	
10,348	1,870	18	44	827	622	205	1,028	445	541	42	15

※ ② = ③ + ④ + ⑤

□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

○ 수급유형별

(단위: 명)

자활사업 참여자 (A+B)	수급자				비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(B)
	소계 (A=①+②+③)	조건부 수급자 ①	자활참여 특례자 ②	일반 수급자 ③	
622	563	531	15	17	59

○ 사업유형별

(단위: 개소, 명)

구분	총계 (A+B)	보건복지부·지자체 사업								고용노동부 (취업성공 패키지) (B)
		계 (A)	업그레이드형			근로 유지형 (차상위 근로포함) ④	Gate way ⑤	자활 기업 ⑥	희망 리본 ⑦	
			시 진 입 형 ①	사 회 서 비스 형 ②	인 턴 도 우 미 형 ③					
사업단수	15	15	3	6	-	-	1	5	-	-
참여인원	622	361	34	36	40	90	11	19	131	261

※ (A) = ①+②+③+④+⑤+⑥+⑦

3 | 2015년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

□ 사업예산 : 2,254,661천원

○ 보조사업 : 2,204,661천원 (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)

○ 자체사업 : 50,000천원 (구비 100%) / 차상위 근로

1) 총괄

유형	사업명 (주요사업내용)	인원					예산 (백만원)	비고
		계	조건부 수급자	자 활 특 례 자	일반 수급자	차상위 계 총		
총계		284	186	24	20	54	2,221	
자활기업 (7)	사랑의가게(물품재활용)	2			1	1	-	자활기업 (비예산)
	굿모닝기획(옥외광고물사업)	1	1	-	-	-	-	
	성북크린(청소사업단)	4	2	-	-	2	-	
	마술빛자루(청소사업단)	3	2			1	-	
	명인C&M(청소사업단)	4	3	1			-	
	꽃향기(꽃판매사업)	2	1		1		-	
	희망SC(스팀세차사업)	4	3			1	-	
시장진입형 자활근로(3)	학교청소사업단	12	10	1		1	193	
	더마실카페	14	9	1	2	2	237	
	자전거사업단	6	2	1		3	97	
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(6)	장애통합교육 보조원파견사업	8	6		1	1	85	민간위탁
	수공예사업단	6	5			1	80	
	컴퓨터사업단	6	6				79	
	함께하면행복한세상 (전문간병도우미사업)	6	5		1		74	
	시각장애인의외출지원도우미	6	4	1	1		74	
	새봄이웃파견(장애인활동보조)	6	3	1	1	1	74	
기타	GateWay과정	45	30	1	4	10	99	
	민간위탁사업 유보액	-	-	-	-	-	45	
인턴·도우미형	인턴형	-	-	-	-	-	-	직접시행
	복지도우미	12	10	0	2	0	166	

유형	사업명 (주요사업내용)		인원					예산 (백만원)	비고
			계	조건부 수급자	자 활 특 례 자	일반 수급자	차상위 계층		
		복지시설도우미	40	26	2	2	10	305	
근로 유지형	보조	불법침지류 제거, 환경미화 등	77	58	15	4	0	563	국시비 보조
	자체		20	0	0	0	20	50	구비
집중취업지원		취업성공패키지	-	-	-	-	-	-	고용노동부 의뢰

2) 분야별 추진계획

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

자활기업 현황

(단위: 명, 천원)

자 활 기업명	인원(명) ¹⁾						사업기간 ²⁾	수익금 현황(천원)						비 고		
	계	수급자						차상 위등	매출액		지출액				적립 액	
		소계	조건부	일반	자 활 특 례	계			총액	월평균	총액		월평균			
											인건비 ³⁾	사업비 ⁴⁾	인건비			사업비
계	20	16	12	2	1	5		184,596	17,463	134,983	49,613	13,057	4,406	0		
사랑의가게	2	1	-	1	-	1	02.11.11~ 14.12.31	36,279	3,024	21,000	15,279	1,750	1,274	-		
굿모닝기획	1	1	1	-	-	-	08.08.31~ 14.12.31	27,462	2,289	17,604	9,858	1,467	822	-		
성북크린	4	2	2	-	-	2	09.10.01~ 14.12.31	42,250	3,520	33,773	8,477	2,814	706	-		
마솔벗자루	3	2	2	-	-	1	11.03.01~ 14.12.31	53,640	4,470	40,896	12,744	3,408	1,062	-		
명인C&M	4	4	3	-	1	-	14.07.01~ 14.12.31	24,965	4,160	21,710	3,255	3,618	542	-		
꽃향기	2	2	1	1	-	-	15.01.01~	-	-	-	-	-	-	-		
희망SC	4	4	3	-	-	1	15.01.01~	-	-	-	-	-	-	-		

1) 2015년 1.1일 현재 참여인원 2) 자활기업 인정일부터 2014.12.31.일까지

3) 자활기업 구성원에 배분된 수익금 4) 사업비 등 기타경비

※ 수익금 현황은 2014년 기준

○ 자활근로사업단 현황

(단위 : 명, 천원)

사업명		인원 1)	예산		
기관명	사업단명		계	인건비	사업비
총계		115	1,170,661	874,811	250,897
성북지역 자활센터	학교청소사업단	12	193,091	143,940	49,151
	더마실카페	14	237,471	166,196	71,275
	자전거	6	97,480	71,227	26,253
	GateWay과정	45	99,400	76,298	23,102
	전담관리자 인건비		30,177	-	30,177
	장애통합교육보조	8	84,849	80,399	4,450
	수공예사업단	6	80,000	66,100	13,900
	컴퓨터사업단	6	79,470	65,750	13,720
장위종합사회복지관	전문간병도우미사업	6	74,590	67,236	7,354
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	시각장애인외출도우미사업단	6	74,590	67,131	7,459
성북장애인복지관	장애인활동보조	6	74,590	70,534	4,056
유보액 (자활기업 한시적인건비 지원, 시범사업단 등)			44,953		

1)2015년도 계획인원

□ 자활근로사업 추진개요

○ 사업대상 : 조건부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, 차상위계층

○ 사업구분

구분	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	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
사업기간	2015. 1. 2 ~ 2015. 12. 31	2015. 1. 6 ~ 2015. 12. 31
	※ 예산범위 내 기간 조정 가능	
사업유형	시장진입형, 사회서비스형	근로유지형, 인턴·도우미형
참여인원	정원 119/ 현원 119	정원 142명 / 현원 132명
근로조건	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5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근로유지형 : 1일 5시간, 주5일 ■ 인턴·도우미형 : 1일 8시간, 주5일
	※ 탄력근무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조정 가능	

○ 급여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시장진입형	인턴·도우미형		사회서비스형	근로유지형
		복지·자활 도우미,인턴형	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		
지급액계	36,770	36,770	33,270	33,270	24,800
급여단가	33,770	33,770	30,270	30,270	21,800
실 비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
표준소득액(월)	878,020	878,020	787,020	787,020	566,800
비 고	1일 8시간, 주 5일				1일5시간 주5일

□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

- 기 간 : 2015. 1. 2. ~ 12. 31.
- 참여대상 : 국민기초수급자(조건부, 자활급여특례, 일반) 및 차상위계층
- 실시기관 : 성북지역자활센터, 장위종합사회복지관,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, 성북장애인복지관

※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(3개 사업단 정원 32명)

사업단명	정원	참여인원(현원)				소요예산(천원)			비 고
		조건부	자활 특례	일반	차상위 등	계	인건비	사업비	
계	32	21	3	2	4	528,042	381,363	146,679	
학교청소	12	10	1	-	1	193,091	143,940	49,151	
더마실카페	14	9	1	2	2	237,471	166,196	71,275	
자전거	6	2	1	-	1	97,480	71,227	26,253	

※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(7개 사업단 정원 83명)

사업단명	정원	참여인원(현원)				소요예산(천원)			비 고
		조건부	자활 특례	일반	차상위 등	계	인건비	사업비	
	83	59	3	8	13	567,489	466,415	74,041	
Gateway 과정	45	30	1	4	10	99,400	76,298	23,102	
장애통합교육보조	8	6	-	1	1	84,849	80,399	4,450	
수공예사업단	6	5	-	-	1	80,000	66,100	13,900	
컴퓨터사업단	6	6	-	-	-	79,470	65,750	13,720	
전문간병도우미	6	5	-	1	-	74,590	40,203	7,354	
사각장애인비출도우미	6	4	1	1	-	74,590	67,131	7,459	
장애인활동보조	6	3	1	1	1	74,590	70,534	4,056	

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

- 기 간 : 2015. 1. 2 ~ 12. 31
- 참여대상 : 국민기초수급자(조건부, 자활급여특례, 일반)
- 실시기관 : 복지관련부서 및 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시설 7개 기관

※ 인턴·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(정원 52명, 현원 45명)

사업단명	정원	참여인원(명) ¹⁾					소요예산(천원)			비 고
		소계	조건부	자활 특례	일반	차상위 등	계	인건비	사업비	
계	52	45	31	-	-	14	471,000	471,000	-	
복지도우미	12	11	6	-	-	5	166,000	166,000	-	
복지시설도우미	40	34	25	-	-	9	305,000	305,000	-	
인턴형	-	-	-	-	-	-	-	-	-	

1)2015년 1월기준

※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(정원 90명, 현원 87명)

사업단명	정원	참여인원(명) ¹⁾					소요예산(천원)			비 고
		소계	조건부	자활 특례	일반	차상위 등	계	인건비	사업비	
근로유지형	77	74	60	7	7	-	563,000	563,000	-	보조
	13	13	-	-	-	13	50,000	50,000	-	구자체

1)2015년 1월기준

자활기금 운영계획

- 201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(단위 : 천원)

기금조성계획		기금운용계획	
구 분	조성액	구 분	운용액
계	1,343,448	계	
출연금(예산)	-	전세점포임대 지원	40,000
민간출연	-	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	40,000
전년도 이월금	1,308,565	자활기업 대여자금 이차보전	-
차입금	-	기 타 사 업	다음연도 이월액
이자수입	34,883		-
자활사업수익금	-		-
기금운용수익	-		-
			1,263,448

4 | 기타 자활지원사업

1) 자활장려금

사업개요

- 지원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
- 사업목적 :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고자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지원
- 사업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(근로유형제외) 및 자활기업 참여자
- 지급일시 : 매월 20일
- 지급기준 : (A)자활근로소득×30% , (B)생계급여 기준
(A) ≤ (B)인 경우 (A), (A) > (B)인 경우 (B)를 지급
- 사 업 비 : 101,143천원(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)

추진현황

(단위 : 명, 천원)

2015년	2014년			전년도 대비 감소액 (C-A)	
예산액 (A)	지원인원	예산액(C)	집행액(D)		잔액(C-D)
101,143	855	170,707	165,533	5,174	△69,564

2) 희망키움통장 사업

사업개요

- 지원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(자산형성지원)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
- 사업목적 :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산형성지원
- 사업대상 :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%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
- 지원대상 : 총 36명(2015년 2월 현재)

- 지원내용 :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지원
- 지원방법 :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하고, 본인저축 10만원에 대한 민간 매칭 지원(2014년 이후 민간매칭금 미적립)
 - ※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생계급여 감소분을 장려금(4인 가구 31만원~62만원)으로 보존
 - 예) $\text{근로소득장려금} = [\text{가구 총 소득} - (\text{최저생계비} \times 0.6)] \times 0.85 (\text{장려금률})$
 - ▶ 2010~12년 가입가구 1.05(장려금률)
- 지원조건 : 일정기간(3년) 지원 후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지급
 - ※ 형성된 자산은 주택비, 교육, 훈련 창업 등 인적 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
 - 예) 평균지원액 3인 1,400만원, 4인 1,700만원 / 최대지원액 3인 2,000만원, 4인 2,400만원
- 사 업 비 : 63,699천원(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)

추진현황

(단위 : 명, 천원)

2015년 예산액 (A)	2014년				전년도 대비 감소액 (C-A)
	지원인원	예산액(C)	집행액(D)	잔액(C-D)	
63,699	36	112,167	105,726	6,441	△48,468

3) 내일키움통장 사업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빈곤탈출을 도모
- 사업내용 :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3년 이내 취창업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급하여 자활사업 안주를 방지
- 사업대상 :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자활근로 참여자 13명(2015년 2월 현재)
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자활 참여자 제외)
- 지원내용
 - 매월 본인 저축(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)
 - 내일키움장려금 적립(중앙자활센터)

- 본인 저축액 1:1(시장진입형), 1:0.5(매출10%이상 사회서비스형), 1:0.3(매출10%미만 사회서비스형) 매칭 지급
 - ※ 가입 첫달 적립, 3년 이내 지급요건 충족 시 일괄 정산지급
- 내일키움수익금 적립(지역자활센터) : 사업단별 차등 지급, 최대 월 15만원
 -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일괄 정산지급
-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에 대한 이자 없음
- 평균(최대) 지원액 : 본인저축10 + 월 내일키움장려금10 + 내일키움수익금8(15) = 월 28만원(월 35만원) ⇒ 3년간 약 1,100만원(약 1,300만원)

4) 생업자금용자

□ 사업개요

- 지원근거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, 1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, 제20조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,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
- 용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
 - 소득기준 : 수급자,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인 자
 - 재산기준 :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자
- 용자기관 : 국민은행
- 용자조건

한 도 액	이 율	용자기간	용자규모
① 무보증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	연 3%	5년 거치 5년 상환	'15년도 87.7억원 (공공자금관리기금)
② 보증 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			
③ 담보 대출 : 담보범위 내(5,000만원 한도)			

- 무보증대출 :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자
(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 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)
- 보증인요건 :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
(용자금액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)

○ 용자절차 : 용자 신청(동 주민센터) → 추천 결정·통지(구청) → 용자(국민은행)
→ 관리(동 주민센터, 구청)

□ 용자실적

구분	신청	용자건수 및 금액			부적합	추천후 미용자
		계	수급자	저소득층		
2014년	2건	1건 20,000천원	-	1건 20,000천원 (차상위)	1건 (신용불량 등 신용문제 결격)	-

※ 사후관리 총 대상 : 14명 214,000천원